

2020학년도

## 학업성적관리규정



완산여자고등학교

## 차 례

I . 목적 .....	1
II . 방침 .....	1
III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	2
IV .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	3
V . 지필평가 .....	4
VI . 수행평가 .....	23
VII . 인정점의 부여 .....	25
VIII . 학업성적 결과 처리 .....	27
IX . 이의신청기간 운영 .....	40
X . 기초학력 더딤학생 지도계획 .....	41
XI . 출결 상황 관리 .....	42
XII .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 .....	45
XIII . 독서활동상황 관리 .....	48
XIV . 창의적 체험활동 관리 .....	48
XV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	49
XVI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	50
[별지1] 학업성적 평가 및 보안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 .....	51
[별지2]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	54
[별지3] 평가 관련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	55
[별지4] 2020 학생평가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 .....	56
[별지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	57

#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 I . 목적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2020.1.6.) 교육부 훈령 제321호에 의거
- 본교에서 적용할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정의 기초가 되게 하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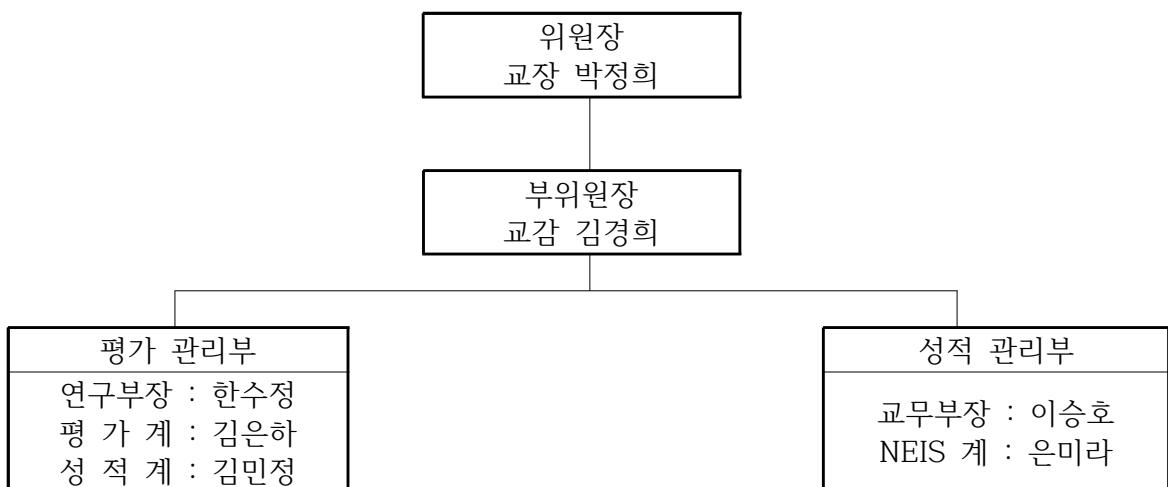
## II . 방침

1.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 도모 한다
2.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협의회(학년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업성적 관리규정 제정하여 시행한다
4.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수행평가 100% 교과는 제외)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의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반영 비율은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의 40% 이상으로 하고, 과제 제출형 방식의 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학생 중심 수업에 맞는 과정중심형 수업밀착 평가를 실시한다.  
※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지필평가의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인 교과
  - 시수가 적은 교과(1단위)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 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8.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친인척)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결재,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소규모 학교 등)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고 학기 초에 학생, 학부모, 교원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발생 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10. 성적관리의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11. 학업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III.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 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라.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 마.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바.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 년도 2월까지로 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가. 교육평가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 나.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상시 운영한다.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관련 자료와 함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관련자료 및 회의록 스캔하여 첨부)를 얻은 후 시행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라.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 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사.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4. 교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가. 교과협의회는 교과별로 국어과, 수학과, 외국어과, 사회과, 과학·기술가정과, 상업과, 전산과, 예·체능과로 구성한다.
- 나. 교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 ①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 ②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확정
- ③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문항 유무 상호 점검
- ④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⑤ 기타 교과 관련 업무
- 다.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는 상시 운영(학기당 2회 이상)하고 협의록을 비치한다.

#### IV.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4.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재공지한다.
  5.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유의 사항 등 평가 전반 내용에 대하여 교직원간에 충분히 논의한다.
  7. 3학년의 경우 취업 및 현장 실습을 감안하여 2학기 평가 횟수와 시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조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8. 지필평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의 양식과 작성 방법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치시켜 안내하고, 결재과정에서 확인하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한다.

## V. 지필평가

### 1. 평가문항 출제

- 가.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범위, 시험시간, 공동출제, 공동채점,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를 통하여 반드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으로 남긴다. 또한 평가 운영 기간(출제, 시행, 채점 등) 중에는 교무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학생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 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문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다. 평가문제는 타당도 .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 학년·교과를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때에는 담당 교사 간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 라.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소수점 배점 등)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 마. 모든 출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판되는 참고서(자습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일
  - 추측에 의하여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

- 고사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 사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유인물로 배부하거나 가르쳐주고 출제하는 일
- 평가 관련 자료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평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

바. 지필평가 중 서술(논술)형 문항을 제외한 서답형 문제 비율은 단위학교의 각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서답형 : 기존의 주관식 문제를 말하고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있음

사. 서술(논술)형 문항은 국어, 사회(역사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경우 지필평가 총 배점의 20% 이상, 도덕 교과는 지필평가 총 배점의 10% 이상 출제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다만, 지필평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논술 방식의 평가를 수행평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배점은 학기당 과목별 총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필평가에서는 서답형(단답형, 완성형)의 비율을 고사별 총 배점의 20% 이상으로 한다. 이때 채점 기준표(답안, 유사답안, 부분점수 등 점수 부여 방법 등)를 완전하게 갖추어 정확한 채점이 되도록 한다.

※ 학기단위 지필평가에서 서술(논술)형 배점은 총 배점의 20%(평균)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 1차 지필 서술형 20% + 2차 지필 서술형 20%

    1차 지필 서술형 10% + 2차 지필 서술형 30%

    1차 지필 서술형 0 % + 2차 지필 서술형 40%

아. 서답형 문제는 문항정보표에 문항별로 채점 기준을 명시하되,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부분점수 부여 유념한다.

자. 문항정보표는 NEIS에 있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혹은 성취기준 번호), 나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NEIS에서 입력할 수 없는 채점기준표 등은 학교단위로 양식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차. 과목별로 제출한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 등은 평가담당교사, 평가담당부장, 교감 등이 철저하게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교사에게 통보하고 수정·제출하도록 한다.

카. 과목별·평가 영역별 비율과 평가 방법은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조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과목별 평가영역 비율(100%=지필평가 반영비율+수행평가 반영비율)  
 <국어>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국어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선택형 (서술)	선택형 (서술)	말하기·듣기
	선택형 (서술)	선택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20점)	70점 (20점)	30점 (20점)	3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4점 4점

<문학>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문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선택형 (서술)	선택형 (서술)	말하기·듣기
	선택형 (서술)	선택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20점)	70점 (20점)	30점 (20점)	3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4점 4점

<수학>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수학(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 고사(25%)	2차 고사(25%)	선택형 (서술)	선택형 (서술)	배움 평가 (서술형)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선택형 (서술)	선택형 (서술)				발표	태도
영역만점	70점 (20점)	70점 (20점)	30점 (20점)	30점 (20점)	3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17.5%	7.5%	17.5%	7.5%	3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10점	4점 4점	

과 목 명	수학(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 고사(25%)		2차 고사(25%)		배움 평가 (서술형)	역량평가 (체크리스트활용)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참여도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17.5%	7.5%	17.5%	7.5%	3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10점	8점

### <수학 I>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수학I(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 고사(25%)		2차 고사(25%)		배움 평가 (서술형)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발표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30점	10점
반영비율	17.5%	7.5%	17.5%	7.5%	3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10점	4점

과 목 명	수학I(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 고사(25%)		2차 고사(25%)		배움 평가 (서술형)	역량평가 (체크리스트활용)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참여도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17.5%	7.5%	17.5%	7.5%	3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10점	8점

## <영어>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영어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말하기	쓰기	
	선택형 (서술)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4점	7점

## <실용영어>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실용 영어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듣기	말하기	쓰기	
	선택형 (서술)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4점	7점

과 목 명	실용 영어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70%			30%		
평가영역	1차고사(35%)	2차고사(35%)	말하기	쓰기		
	선택형 (서술)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24.5%	10.5%	24.5%	10.5%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4점	7점

### <비즈니스영어>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비즈니스영어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평가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무역통신문 이해 활동	무역통신문 작성 활동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7점	7점

### <관광중국어> 평가영역비율

과목명	관광중국어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배움 평가		수업밀착형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선택형	서답형	읽기	쓰기	발표	수업참여도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20점	15점	15점
반영비율	21%	9%	20%	20%	15%	15%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4점	4점

### <통합사회>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통합사회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고사(25%)		2차고사(25%)		사회·예술 융합 (20%)	인문·사회 융합 (20%)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17.5%	7.5%	17.5%	7.5%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4점	

### <한국사>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한국사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역사탐구평가 (발표)	수업 참여도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3점	7점

### <사회·문화>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사회·문화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 고사(30%)		2차 고사(30%)		팀별 평가 (하브루타수업)	개별 역량 평가 (뉴스 읽고, 논평하기)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7점	7점

### <통합과학>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통합과학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자유탐구	수업 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4점

### <생명과학 I>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생명과학 I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자유탐구	수업 밀착형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2점	4점

### <기술·가정>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기술 · 가정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포트 폴리오	문제 인식 및 해결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1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3점	3점	3점

### <음악>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음 악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표현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가창	기악 (창작)		
영역만점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12점	12점	8점	8점

### <체육>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체육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건강체력	체육기능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경쟁	경쟁
영역만점					20점	40점	40점
반영비율					20%	40%	40%
기본점수					8점	16점	16점

### <운동과 건강>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운동과 건강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0%			10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		건강체력	체육기능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경쟁	경쟁
영역만점					20점	40점	40점
반영비율					20%	40%	40%
기본점수					8점	16점	16점

### <미술>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미술			
평가방법(1학기)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전통미술	평면표현	평면표현	감상
	창의성.발상의 확장.완성도	표현기법의확장 추상표현	다양한 장르에서의 채색	미술작품과 작가에 대한 논리적인 표현과 발표
영역만점	30	30	20	20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12점	12점	8점	8점

과 목 명	미술			
평가방법(2학기)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시각디자인	공예	감상	포트폴리오
	집중력과 끈기. 표현의 섬세함	창의력. 완성도.	전시장을 다녀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레포트 제출	1년동안 미술시간에 이루어진 모든 작업들의 모음집
영역만점	30	30	20	20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12점	12점	8점	8점

#### <상업경제> 평가영역비율(1학기)

과 목 명	상업경제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발표	자기 평가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1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7점	4점	4점

#### <상업경제> 평가영역비율(2학기)

과 목 명	상업경제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발표	자기평가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7점	7점

### <회계원리>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회 계 원 리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 고사(25%)		2차 고사(25%)		자기 역량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수업밀착형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발표 참여도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30점	10점
반영비율	17.5%	7.5%	17.5%	7.5%	3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12점	2점

### <회계정보처리시스템>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회계정보처리시스템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30%)	배움평가 (서술형)	문제해결1 (실습형)	문제해결2 (실습형)	역량평가 (수업참여도)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	-	70점	3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	-	21%	9%	20%	20%	10%
기본점수			0점	8점	8점	8점	4점

### <회계실무>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회계실무						
평가 구분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전체 반영 비율	20%		80%				
평가영역	능력단위 (내용영역) 평가내용 (내용영역 요소)		1학기 2차고사	전표관리		회계정보시스템 운용	
				수행 1	수행 2	수행 3	수행 4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전표작성	증빙서류관리	회계DB 마스터관리	회계프로그램 응용 및 활용	
영역만점	70점	3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반영비율	20%		40%		40%		
능력단위 반영비율			50%		50%	50%	
기본점수	0점		40점		40점	40점	
평가시기	1학기	8월	6월 ~ 8월				

평가 구분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전체 반영 비율		20%		80%			
평가 영역	능력단위 (내용영역)	2학기 2차고사	자금관리		결산관리		
	평가내용 (내용영역 요소)		수행 5	수행 6	수행 7	수행 8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현금 및 예금관리	어음·수표관 리	결산분개	장부 마감하기
영역만점		70점	3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반영비율		20%		40%		40%	
능력단위 반영비율				50%	50%	50%	50%
기본점수		0점		40점	40점	40점	40점
평가시기	2학기	12월		9월 ~ 12월			

### <세무일반>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세 무 일 반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직무수행 필요지식	실무 적응능력	직무 수행능력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10점	10점	20점
반영비율	21%	9%	21%	9%	10%	10%	2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4점	4점	7점

### <기업자원통합관리>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기업자원통합관리(ERP)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고사(30%)			ERP프로그램 운용능력			
	선택형	서답형	시스템 관리	회계 관리	인사 관리	참여도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0%	2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6점	6점	6점	3점	

### <사무관리>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사무관리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평가영역	2차 고사		배움 평가		역량 평가
	선택형	서답형	적용	기능	참여도
영역만점	70점	30점	40점	20점	10점
반영비율	21%	9%	40%	20%	10%
기본점수	0점	0점	16점	8점	4점

### <커뮤니케이션>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커뮤니케이션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이해표현활동 (2회)	학습참여도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3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3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12점	4점

### <사무행정2학년>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사 무 행 정				
평가 구분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전체 반영 비율	30%	70%				
평 가 영 역	능력단위 (내용영역)	학기별 2차고사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문서작성
	평가내용 (내용영역 요소)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하기			문서 완성 하기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기본작업 실습	계산작업 실습	분석작업 실습	문서작성 및 수정
영역만점	70점	30점	30점	30점	40점	10점
반영비율	30%			60%		10%
능력단위 반영비율			30%	30%	40%	100%
기본점수	0점		6점	6점	8점	3점
평가시기	1학기	8월	5월	6월	7월	학기중
	2학기	12월	9월	10월	11월	

### <마케팅과 광고>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마케팅과 광고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40%			60%		
평가영역	1차고사(20%)		2차고사(20%)		표현활동 (발표)	역량평가 (수업 준비)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50점	10점	
반영비율	14%	6%	14%	6%	50%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20점	4점	

### <기업과 경영>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기업과 경영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발표 및 활동지 (2회)	학습참여도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3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30%	10%	
기본점수	0점		0점		12점	4점	

### <금융일반>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금융일반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평가내용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이해활동	모둠활동	참여도와 발표
영역만점	60점	40점	60점	40점	15점	15점	10점
반영비율	18%	12%	18%	12%	15%	15%	10%
기본점수	0점	0점	0점	0점	6점	6점	4점

## <사무행정3학년>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사무행정				
평가 구분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전체 반영 비율		20%		80%		
평 가  영 역	능력단위 (내용영역)	학기별 2차고사	문서작성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평가내용 (내용영역 요소)		문서작성 자료 조사하기	문서작성 자료 정리하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활용하기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실습	프로그램 실습
영역만점		60점	4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20%		40%		40%
능력단위 반영비율		50%		50%	50%	50%
기본점수		0점		7점	7점	7점
평가시기	1학기	8월	X	학기 중		
	2학기	X	10월	학기 중		

## <창구사무> 평가영역비율

과목명		창구사무(1학기)				
평가방법(1학기)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20%		80%		
평가(내용)영역	2차고사(20%)	입지급거래	제신고처리	출납관리	외국환거래	
	선택형	체크리스트 (역할극)	포트폴리오 (활동지)	체크리스트 (협동학습)	포트폴리오 (활동지)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14%	6%	20%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8점

과 목 명		창구사무(2학기)				
평가 구분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전체 반영 비율		20%		80%		
평 가  영 역	능력단위 (내용영역)	2학기 2차고사	전자금융서비스		부수업무 처리	
	평가내용 (내용영역 요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공과금업무	중급납입 대여금고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프로젝트 과제	포트폴리오 (활동지)	체크리스트 (협동학습)
영역만점		70점	30점	80점	20점	80점
반영비율		14%	6%	40%		40%
능력단위 반영비율		80%		20%	80%	20%
기본점수		0점		32점	8점	32점
평가시기	1학기	8월	X	학기 중		
	2학기	X	12월	학기 중		

## <광고콘텐츠제작>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광고 콘텐츠 제작							
평가 구분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전체 반영 비율		20%		80%					
평 가  영 역	능력단위 (내용영역)	1학기 2차고사		2D그래픽 제작					
	평가내용 (내용영역 요소)			선택기 능과 이미지 편집 도구 활용	이미지 복원 및 브러시 도구 활용	이미 지리 터칭 활용 한 이미 지	그라디 언트 활용한 광고이 미지	도형 툴과 펜툴 기능 익히기	타이포 그라피 만들기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프로 그램 실습	프로 그램 실습	프로 그램 실습	프로 그램 실습	포트 폴리오	프로 그램 실습
영역만점		70점	30점	10점	10점	20점	20점	20점	50점
반영비율		20%		60%					
능력단위 반영비율				10%	10%	20%	20%	20%	50%
기본점수		0점		4점	4점	10점	10점	10점	20점
평가시기(1학기)		8월		학기 중					

과 목 명		광고 콘텐츠 제작							
평가 구분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전체 반영 비율		20%		80%					
평 가  영 역	능력단위 (내용영역)	2학기 2차고사		2D그래픽 제작					
	평가내용 (내용영역 요소)			컬러를 활용한 광고제 작	이미지 복원 을 활용한 광고이 미지	입체 문자 만들 기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활용	컴퓨터 일러스 트레이 션	타이포 그라피 활용한 포스터 제작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프로 그램 실습	프로 그램 실습	프로 그램 실습	프로 그램 실습	포트 폴리오	프로 그램 실습
영역만점		70점	30점	10점	10점	20점	20점	20점	50점
반영비율		20%		60%					
능력단위 반영비율				10%	10%	20%	20%	20%	50%
기본점수		0점		4점	4점	10점	10점	10점	20점
평가시기(2학기)		10월		학기 중					

## <성공적인 직업생활>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성공적인 직업생활					
평가방법(1학기)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고사(25%)		2차고사(25%)		삶일 직업	문서작성 과 발표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17.5%	7.5%	17.5%	7.5%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평가방법(2학기)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비율	50%				50%	
평가영역	1차고사(25%)		2차고사(25%)		회사와 일	문제해결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영역만점	70점	30점	7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17.5%	7.5%	17.5%	7.5%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 <전자상거래실무> 평가영역비율

과 목 명	전자상거래실무(1학기)					
평가 구분(1학기)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전체 반영 비율	30%		70%			
평가영역	능력단위 (내용영역)	2차고사		사이트운영	판매관리	사이트 구축
	평가내용 (내용영역 요소)			사이트운영하기	상품판매관리하기	사이트구축하기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포트폴리오1	포트폴리오2	포트폴리오3	
영역만점	70점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20%	20%	
능력단위 반영비율			100%	50%	50%	
기본점수	0점		12점	8점	8점	
평가시기	8월		수시			

과목명		전자상거래실무(2학기)			
평가방법		지필평가		수행평가	
전체 반영 비율		30%		70%	
내용 영역 내용영역요소		2차고사		사이트운영	판매관리
				사이트운영하기	상품판매관리하기
평가방법	선택형	서답형		포트폴리오1	포트폴리오2
영역만점	70점	30점		40점	30점
반영비율	30%			40%	30%
능력단위반영비율				100%	100%
기본점수	0점	0점		16점	12점
평가시기	12월		9월~12월		

\* 과목별 수행평가의 기본점수는 평가영역별 영역만점의 10~40%를 권장함.

## 2. 고사 관리 방법

### 가. 평가문제 인쇄 및 관리

- 1)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 과정을 거친 후 관리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 2) 평가담당 부장교사와 담당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등의 전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학교장은 정기고사 일정 발표 후부터 정기고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출제 장소,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철저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보안 및 인쇄관리 담당자로 연구부장과 평가계교사를 지정한다. 특히 인쇄관리 담당자는 평가대상 학생의 부모 및 친·인척이 아닌 직원으로 지정한다.

\* 평가관리실이란 평가기간 동안 보안 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곳(특별실, 교무실 등)을 말함

- 4)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교무실에서 검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봉인하고 여분의 문제지와 함께 평가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 나. 고사 시행

- 1) 정기고사 시행에 있어서는 고사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 2) 정기고사 시정표상에 문답지 배부 및 유의사항 전달시간 5분을 반드시 배정한다. 특히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표기를 절대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답안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장 또는 교무실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훼손된 답안지 내용과 동일하게 새 답안지에 옮겨 기록한다.
- 3) 감독교사는 가능한 동일교사가 동일고사실에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배정하여, 담임교사의 자기학급 시험감독 배정 및 교사와 자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의 학급 감독 배정을 배제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감독을 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교사를 교체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사 시행 전에 반드시 평가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고사감독 배정표에 반영하고 평가담당교

사가 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를 득한다.

- 4) 가급적 1학급을 2개 이상 고사실로 분반하여 실시, 고사실 당 2인 감독 배치(학급당 18명 이상인 경우 필수사항),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복도감독 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 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 5)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학급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법을 사전에 지도해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시험 시작 전 감독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7)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학교 규칙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감독을 엄정하게 한다. 또한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금하고 답안지의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한다.
- 8) 출제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과목 평가시간에 감독을 배정하지 않고 교무실에서 대기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비한다. 만일 고사 도중 출제문제에 오류가 발견되면 고사 진행시간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오류 문제를 정정하여 고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고사 종료 후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린다.
- 9) 감독교사는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응시현황(재적인원, 응시인원, 결시자수, 결시자 명단 및 결시 사유 등)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답안지 회송용 봉투)의 소정란에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출제자(교과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 10) 출제자(교과담당 교사)는 인계받은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고 채점한다.
- 11) 가급적 고사 당일 정답을 발표하되, 서답형 문제는 채점 기준, 유사정답 및 부분 점수를 함께 공개한다.

#### 다. 채점 및 답안지 처리

- 1) 정기고사 답안지의 채점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교무실에서의 반출을 자제한다.
- 2) 답안지의 수기 채점 시에는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유무를 2검 확인하되 교사를 달리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3) 답안지를 전산 처리할 경우에는 서답형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고, 채점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2검 확인하되 교사를 달리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 4)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 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과담당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필평가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5) 서답형 답안지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채점 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받고 채점에 적용한다.
- 6)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 등의 내용은 결재 후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물을 근거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담당교사는 수정 전·후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7)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정기고사 결과물(답안지, 고사원안, 문항정보표, 서답형 채점기준표 포함)은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성적처리 완료 시점부터 5년) 보관하여야 한다.

## **VI. 수행평가 관리**

### **1. 수행평가 방법**

- 가. 구성적 반응 요구형 : 논술형 문항, 도표나 그림에 제목 붙이기, 시각적 자료 만들기(개념도 나 흐름도, 그래프나 표, 도안 등)
- 나. 특정 산출물 요구형 : 수필, 실험·실습, 이야기·극본, 시(poem), 포트폴리오 미술작품, 과학 프로젝트, 모형(model)구성, 비디오·오디오구성
- 다. 특정 활동 요구형 :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구두발표, 무용·동작발표, 과학실험 시연, 체육 경기, 연극, 토의·토론, 음악발표
- 라. 과정 표현형 : 구두질문, 관찰, 면담, 회의, 과정(process)에 대한 기술,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think aloud), 학습 일지

### **2. 수행평가 시행**

- 가. 수행평가의 영역, 반영비율, 방법, 횟수, 세부 기준(배점), 기본점수의 부여 등은 과목별·평 가영역별 비율에 맞게 교과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나.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수행평가의 대상, 시기, 내용, 처리방법, 평가 기준, 미응시자 처리 기준 등)을 학교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사전 안내한다.
  - 다. 수행평가 계획 수립·운영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 재구성, 학생 참여 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상황 안에서 흥미, 자기 효능감, 참여, 협력, 배려, 경청, 책임, 실천, 동기, 가치 등의 평가 요소를 적절하게 설정 반영될 수 있도록 구안하고,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 2)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정규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 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3)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정기고사 시간에 지필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국 시도 차원의 영어듣기 평가는 예외로 하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 4) 특정 기간에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적정화한다.
- 5) 예·체능 교과는 이론, 기능, 감상, 미적체험,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역은 수업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6) 모둠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전출입 학생 발생 시 전출학교는 전 출 일까지의 수행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전입학교에서는 전출학교에 수행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라. 평가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성적 고지 후 3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학교 수행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을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사. 지체장애 및 감각장애(시각, 청각)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처리 방법은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시>

※ 기본 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기본점수 제외)}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기본 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text{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 국어와 외국어의 말하기·듣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

- 아. 수행평가 결시 자에게는 1회의 응시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 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 자.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학생들의 이의신청·점수·처리·확인과정 등)는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 기록 자료(성적일람표 등)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차.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은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 교과담당교사가 보관하고, 보관기간은 해당 학기 종료일까지로 하며 보관시간이 종료된 후 폐기한다.
- 카.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타. 학습독서 활동 결과물의 수행평가 반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독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교과에서 각 교과 수행평가 총점의 30% 내외를 교과 관련 독서 실적으로 반영 권장한다.
  - 학교별, 학년별, 교과별로 평가 요소를 다양하게 정하여 실시한다.
  - 반영 방법 : 교과협의회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파. 국어과의 독서평가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되, 반영비율 및 실시여부는 국어과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VII. 인정점 부여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입원 등에 의하여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 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인정점 부여 및 관리(산출) 방법을 따르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학기 내에 지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인정점 반영비율과 반영기준은 인정점 부여 및 관리 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되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학기 도중에 전입한 학생은 전 재적 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전입 이전의 성적으로 반영하되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4. 휴학, 유급, 자퇴, 퇴학 등의 사유가 끝나 재·편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5. 기준점수 산출방법
  -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학기 내 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 6.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수학	68.0	65	62.3	47.64

-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 \times 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times 0.8$ (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 7.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증지 등”으로 인한 결석
-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1) 미인정결석
- 2) 고사기간 중 교외 체험학습은 불허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외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출석은 인정하되 성적처리는 미인정 결석에 준해서 처리하며 고사 종료 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이의신청을 놓친 경우, 불이익은 학생에게 있음을 반드시 안내한다.)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 VIII. 학업성적 결과 처리

1. 2020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나, 2018, 2019학년도 입학한 2020학년도 2, 3학년의 '한국사'는 2009 개정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을 적용 받는다. 각 학년에 대한 성적 산출법은 교육부 훈령 제321호, 제280호, 제243호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적용일정에 각각 따른다.
2.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단,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교양교과(군)의 과목'과 '나~마'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 나. 2020학년도 1, 2학년의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시 외 과목 포함)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 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2020학년도 1, 2학년)과 전문교과Ⅱ,Ⅲ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

취도만 산출한다.

- 라.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 마. 고등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오순도순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단,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2020 학년도 1,2학년)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분포비율’을 산출,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하고 교양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와 석차등급에 ‘P’처리를 한다.
3.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2018학년도 신입생 -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 급	비 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보통교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일반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체육예술	○	○	○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II'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 I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 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 I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2015 개정 교육과정(2019, 2020학년도 신입생 - 2020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보통교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 산출
	일반선택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체육·예술	○	○	- ※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II'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I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I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 실험,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4.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보통교과]**

2020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석차 (동석차수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반/번호, 성명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0	95	A	1	4(15)/532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0	71	C	5	273/532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전문교과]

2020학년도 제1학기  
상업 경제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553)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진로 선택 과목] -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이후

2020학년도 제1학기  
실용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강의실명)

교과담당교사 (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반/번호, 성명									
1/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553)
1/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B(553)
1/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강의실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성취도별 분포비율								A(30.2) B(45.3) C(24.5)	

- ‘김길동’의 지필평가 1차 환산점수  $28.50(30 \times 95 / 100 = 28.50)$ 은 100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000 환산점수  $8.80(10 \times 44 / 50 = 8.80)$ 은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경우이다.
- 수강자 최고점, 수강자 최저점, 수강자 평균, 강의실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성적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 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성적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 수강자수’란은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다.
- 전문교과 II, III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보통교과 ‘과학탐구실험’과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므로, 성적일람표 환산 점수 산출 방법은 ‘전문교과 II’의 방법을 준용한다.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이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bar{6}$ 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는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2차 고사)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학업중단 학생(자퇴, 제적, 휴학)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5.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 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 100%이하

6.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전문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7.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두어,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5'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8.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이는 2020학년도 1,2학년이 해당된다.

※ 2020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는 경우 1)는 2018학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다.

- 1)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학점)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공동출제 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 (수강생 성적통합산출처리:무학년제)-Q&A Q.14번

1) 교육과정 특성상 학과별로 교육내용이 재구성되어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다르며(교과진도계획표상) 평가문항(지필·수행평가)도 다른 경우를 말한다.

과 Q.16번 참고

※ ‘특정 과목’을 ‘두 개 학년 이상’이 ‘동일 시기’에 ‘동일 단위’를 이수하는 경우 수강자를 통합하여 평가한다.(2020학년도 전라북도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지침)

2) 복수계열 학과가 설치된 일반 고등학교는 계열별 수강학생 수를 수강자 수로 한다. 단, 동일 전문계열 내에서는 위의 1)에 준한다.

나. 위 ‘가. 1)’의 상황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강자 수를 분리 산출한다.

서로 다른 학년의 3개년 교육과정편성상 ‘특정교과목’에 대하여 ‘특정학기’에 ‘이수단위가 동일’하더라도, ‘시작학기 또는 총 이수단위가 다를 경우’,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교과진도계획표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보아 수강자 수를 분리 산출한다.(수강생 성적분리산출 처리)

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 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라.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 9. 직업과정 위탁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

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위탁과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1)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석차등급 없이 원점수(평균, 표준편차)와 성취도의 이수여부만을 산출할 수 있다.

2)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입력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3)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4) 위탁 교육기간의 교육 일수는 재적 학교의 수업 일수로 산정한다.

나.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수강자 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 1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는 지필 및 수행평가는 원적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교육기관은 실시하지 않는다.
- 나. 학생과 보호자, 위탁교육기관에 지필 및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절차(고사기간, 평기방법, 응시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여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다. 과목별 수행평가 미응시(또는 미참여)에 대한 성적 처리(기본 점수 부여 등)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 라. 원적교에서 지필고사 기간 및 응시를 안내를 했음에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 처리(인정점 부여 등) 등 이 지침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1.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 가.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일반계고(전문계열학과) 현장 실습생 성적 처리

- 1) 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하여 교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 2)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점수와 학교에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 세부사항은 「2020학년도 전라북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3) 현장 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입력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기록한다.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현장체험학습(산업체 견학) 현장실습 직무분야: 기계 실습기간: 2020.○○.○○.-2020.○○.○○. 실습내용: 자동차 조립 과정 견학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도제교육(미용)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0.○○.○○.-2020.○○.○○. 실습내용: 헤어디자인 L3
현장실습유형: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재료 실습기간: 2020.○○.○○.-2020.○○.○○. 실습내용: 공작기계용 부품 가공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현장실습유형: 기타(글로벌 현장 학습) 현장실습 직무분야: 디자인·문화 콘텐츠 실습기간: 2020.○○.○○.-2020.○○.○○. 실습내용: 웹페이지 제작 및 유지

- 4) 단일과목(예: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는 이수단위와 함께 원점수(필요시 과목평균, 표준편차)등을 입력하거나 이수여부만을 입력하고 또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직무분야(17개 교과군 중에서 입력), 기간, 내용을 입력

한다.

- 5)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방법에 따르고,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년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 6)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의 입력은 재적학교 및 현장 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학급담임교사가 작성한다.
- 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이수 여부, 현장실습대상기관, 실습기간을 해당 학교장 또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력하며, ‘가~바’의 내용을 준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 ※ 이 때, ‘현장실습 직무분야’는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군) 중에서 입력함

## 12.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 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학력 인정과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에 의한다.
- 나. 조기 진급자의 2학년, 조기 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란은 공란으로 두되,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인정 평가 결과만 각각 2,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입한다.

## 13.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성적 처리

- 가. 소년원학교 이수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 1)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3)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 4) 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다.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

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위의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 ※ ‘가~마’항 이외의 사항은 [별지19] 위탁학생, 병원학교 · 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고

#### 14.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의 성적처리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학교의 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병원학교, 화상수업 등)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나. 출결처리
  -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21호) [별표8]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 다. 성적처리
  -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21호) [별표9]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2) 전라북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15.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 학생의 성적처리

구분	처리 방법
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둔다.</li> </ul> <p>* 재적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p>
출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결은 소속학교의 담임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 확인서에 따른다.</li> </ul> <p>해당월의 수업일수와 출결내용은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과 소속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출결 처리함</p> <p>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21호)」[별표8]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p>
성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li> <li>-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li> </ul> <p>* 재적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비교과 영역: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li> <li>- 교육정보 시스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li> </ul>

16.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7.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 나.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다.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마.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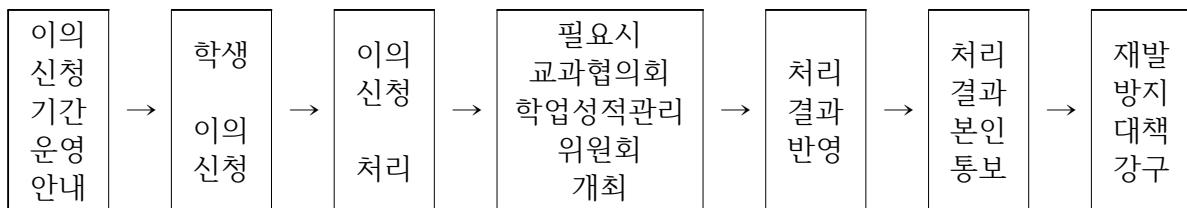
- ※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321호)’ 제4조’ 및 그 해설에 따라 전 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교과학습발달상황(성적포함),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는 정리하여 전입학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 ※ 전입 학생의 이전 학년도 자료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한다.  
다만,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18.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가.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나.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 다. 재·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 라. ‘가~다’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19.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가.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필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나.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 (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다.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라.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 마.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IX. 이의신청 기간 운영

1. 운영 목적 :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성적처리
2. 이의신청 기간 : 시험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고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한다.

### 3. 이의신청 처리 절차



### 4.. 유의사항

- 교과별 평가규정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이의신청 기간 운영에 대한 내용 반드시 포함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책 논의
- 교과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처리 방법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장 결재 후 결과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전·후 변경된 평가관련 서류는 결재 절차를 거쳐 보완
- 평가의 공정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X. 기초학력 더딤 학생 지도계획

### 1. 목적

- 기초 학력 더딤 학생을 위한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습 생태계 구축
- 기초 학력 더딤 학생 관련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 기초 학력 더딤 학생 지도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노력
- 기초 학력 더딤 학생 지도와 관련한 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 제고
- 참 학력 중심의 멘토-멘티 협력학습 체제 구축
- 단 한명의 학생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는 학생중심, 과정중심, 성장 중심 수업설계

### 2. 기본방침

- 단위학교 과목별 평가규정에 기초 학력 더딤 학생 지도계획 수립.
-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기초학력 더딤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교환하고, 이들 학생에 대한 공동 지도계획 수립
- 동료학생 멘토-멘티 결연을 통하여 학습의 전 과정 및 학교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도록 함
- 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신장 예산을 수립하고 기초 학력 더딤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3. 방법

- 또래 학습 나눔 동아리 활동 등 멘토-멘티 관계 구축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사와 기초 학력 더딤 학생대상 자기 주도 학습방법 강사초청 연수
- 이웃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기초 학력 더딤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 기초 학력 더딤 학생 지도 전문 강사를 초청한 방과 후 교육
  -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소질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방과 후 활동 활성화
- 독서논술 및 음악, 미술 등 동아리 활동과 특별활동 활성화
- 멘토 학생 또는 도우미 강사를 통한 정규수업 시간 도움교육
- 수업참여와 흥미를 제고하고, 학업 효능감을 높이는 교수학습 개선

## XI. 출결 상황 관리

### 1.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 2.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 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 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출석인정 시 성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2018.04.06.부터 적용).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단위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9:00)과 하교시각(월,화,수,목 16:30, 금 15:30)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이에 대한 안내를 학생·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전체 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XII. 교과학습발달상황 관리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가.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2020학년도 1,2학년만 해당)
  - 나.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2020학년도 1,2학년만 해당)
  - 다. 전문교과 II, III :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라.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2.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되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전문교과)도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

※ 단, 과목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 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체육·예술(군) 및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과 방과후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가. 체육·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나.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다.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교과담당(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 이수시간만을 기재 함.(2020학년도 3학년만 기재 가능)
  - 라.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II 실무과목: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충학습의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2020학년도 1학년부터 순차적 적용)
4.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5. 전문교과 I 및 보통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및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2020학년도 1,2학년),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6.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가 입력하며 2020학년도 1,2학년은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7.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

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2020학년도 1,2학년),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9.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전입생 미이수 보충학습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과후학교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0학년도의 경우 3학년에 한함)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 10.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Ⅱ 예시>**

**6. 교과학습발달상황(일부발췌)**

[1, 2학년]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진로 선택 과목>**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예술>**

학기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비고
1					
2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이수학점 합계							

과목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진로 선택 과목>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비고
이수학점 합계							

과목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예술>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성취도	비고
이수학점 합계					

과목	③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XIII. 독서활동상황 관리

-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란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XIV.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관리

-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다만,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 2020학년도 1,2학년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2.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다만, 2020학년도 1,2학년은 봉사활동 실적만 입력한다.
3.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누가 기록 방법(기재·관리 방법 포함)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취합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4.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5.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2020학년도 1,2학년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스포츠클럽은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6. '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다만, 2020학년도 1,2학년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단체명만 입력하고,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7.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2020학년도 1,2학년 제외)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8. 학생이 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별 누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 등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한다.
9.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10.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누가기록은 일괄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 XV.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2.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나 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

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교무수첩이나 컴퓨터 파일 등에 기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 기록은 별도로 결재받지 않는다.
6. 전출 시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누가 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NEIS에 입력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 XVI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1.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제10호의1)의 결재 절차(4단 결재)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교육부 훈령 제243호, 2020학년도 3학년)과 제7조 인적·학적 사항(교육부 훈령제321호, 2020학년도 1,2학년)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4.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을 제공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 가.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 나.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2020학년도 3학년)  
※ '인적·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2020학년도 1,2학년)
  - 다. 제1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 부 칙

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1]

학업성적 평가 및 보안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가 기반 구축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및 연수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정확성·공정성 확보	관리자,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수립 (수행평가 포함)	고사일시, 과목, 횟수, 반영비율, 평가영역, 평가방법, 채점기준 등 포함(반드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	전 교사
	보안관리 계획 수립	<u>평가 단계별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 책임자(평가관리실, 인쇄실 등) 지정</u>	관리자 행정실장 평가담당 평가부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재	연간평가계획 등 심의 및 학교장 결재	평가담당
	연간평가계획 홍보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포함)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 사전 안내(학생, 학부모),	
	평가연수 실시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연수 강화	전교사
출제	성적처리 선행작업	NEIS 입력사항 선행처리	교과담당
	학생 대상 안내	고사 시간표, 과목별 시험 범위,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절차, 인정 점 및 동점자 처리 규정, 지각생 및 결시자 처리규정, 이의신청 기간 운영 등 고사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특히 수행평가는 방법, 일시, 장소, 배점, 결시자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	담임 교과담당
	출제 시 유의사항	정기고사 진행 전과정에 대한 유의사항, 단계별 보안관리, 학생평가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 부정행위예방 관련 등 연수	평가담당
		출제관련 교과협의회 실시 - 평가범위, 출제유형, 문항 수(공동출제 시 반드시 출제문항 공동검토)	교과담당
		공동 출제·검토(교사 1인 출제 경우 - 교과부장 검토)	
		지난 년도(학기) 문항 재출제, 출판사 제공 교사용 교재(CD) 및 참고서 전재 여부 등 부적정 출제 사례 확인	교과담당 결재권자
		배점표시, 동점자 양산 방지, 평가문항 수 증대, 배점 다양화, 역배점 지양 등 평가관리 공정성 확보	교과담당
		출제원안 서식 통일(학교, 출제자, 쪽수, 문항수, 배점 등)	평가담당
		출제원안 파일은 암호 넣어 보관(이동식 저장매체 이용), 평가 관련 자료 네트워크 이용 전송 금지 확인용 원안 및 파지 분쇄 ※출제 관련 문제지, 자료 등 교외 반출 금지	교과담당
		서답.서술형 채점 기준 작성(부분점수, 유사정답 포함) 파일 암호 넣어 보관	
	학생출입 통제구역 지정 및 홍보	인쇄실, 교무실, 평가관리실 등(분실 및 도난 유의) (원안출제 시작부터 고사종료까지)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출제	평가문항 출제 및 고사원안 제출	NEIS를 통한 문항정보표 작성(성취기준, 동점자 최소화 고려 배점 부여, 성취내용 기재 등 표시) 계열 및 과목코드, 총점 확인	교감 교과담임 평가담당 평가부장
		결재 선에 따른 검토 및 결재(부모 및 친인척 배제) 원안 보관 및 보안 관리 철저	
	분할점수 산출	해당 교과 단위학교 분할점수 산출, 결재 및 학생 공지 (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	교과담임
인쇄 및 보관	인쇄 및 보관 (보안 관리)	인쇄 담당자 보안 교육, 원안 수령 당일 인쇄 원칙 (인쇄한 문제지, 원안, 파지 보관 철저) ※당일 인쇄가 어려울 경우 평가 원안 평가담당에게 인계	교감, 행정실장 평가부장 인쇄 담당자 교과담임 평가담당
		인쇄 상태 확인 및 수정, 문제지 매수 확인, 답안지 준비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	
		인쇄실 및 평가관리실 보안관리 철저(담당자 지정, 이중잠금장치, 보안경비시스템 운영 등) 문제지 보관장 이중잠금장치 설치	
시행	고사 관리 유의사항	고사 관리 유의사항 연수(교사, 학생 대상 실시) (학부모 감독시 위촉장 수여 및 연수 실시)	평가담당
		학급별 응시 현황 및 고사 시간표 게시(칠판)	학급담임
		OMR 답안지 작성 및 교체 시 유의사항 지도	담임/감독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 미제출 금지 및 지도	담임/감독
		부정행위 사전 예방 철저	담임/감독
		실제 고사 시간 확보(준비령 시행, 문답지 배부시간 5분 확보)	담당/감독
		지각생 처리 기준 준수	
		결시생 답안 카드 작성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규정 준수	
		답안지 교체 가능 시점 기준 준수	
		회수 답안지 매수 확인	
		답안 봉투 및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 동일한 날인 또는 서명	
		답안지 봉투의 기재 사항 확인	
		교환·폐기·여분 답지 등 회수	
고사감독 배정		평가 당일 발표(해당시간 출제교사는 시험시간 중 대기)	평가담당
		담임을 맡은 학급, 교사의 자녀·친인척 등이 속한 학급시험 감독 배치 금지	평가담당
		감독교사 임의 교체 금지(고사 전 또는 후에 결재)	감독
		2인 감독, 학부모 보조감독, 복도감독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고사감독 배정	평가담당

구분	단계별 업무	세부추진내용	담당자
평 가 후	고사정답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간, 방법 등 결정	평가담당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 확인 문항별 배점, 채점기준 등에 따라 채점 결시생·전입생·특기생 등 인정점 부여	교과담당	
		답안지 봉투 서명 확인(감독, 채점, 1검, 2검)	교과담당
	정답 없음, 정답 수정, 유사답안 추가, 부분점수 추가 등의 경우 발생시 절차 준수(교과협의회→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수정사항 공지)	교과담당 평가담당	
	이의신청 기회 부여(절차에 따라 처리)	교과담당	
	성적 최종 확인	학생 개인별 답안지와 채점표 직접 확인 후 날인	교과담당
	NEIS 성적 마감	학생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성적마감 처리	교과담당
	성적처리	모든 교과의 성적 마감 후 성적처리	평가담당
교 과 별 평 가 분 석 및 환 류	성적표 출력·발송	우편으로 성적표 발송 후 학부모에게 SMS 문자 안내	학급담당
	답안지 및 성적확인 자료 보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평가담당
	교과별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	동일교과 학급별 편차, 문항별 오답율 분석 등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 (교과협의회 후 교과협의록 작성)	교과담당
시험문항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개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평가담당	

[별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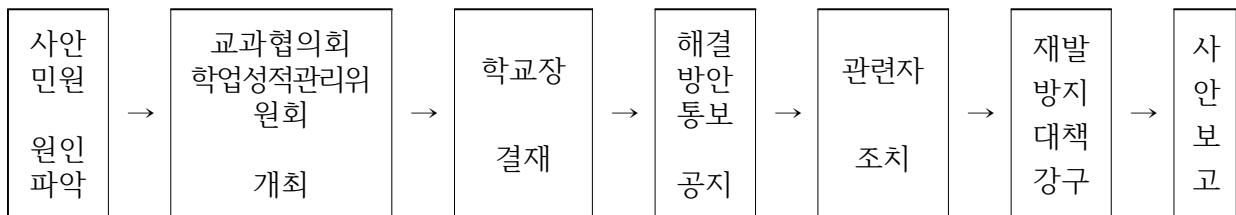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예방 조치**

구분	내 용
부정 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li> <li>✓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li> <li>✓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li> <li>✓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흘려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li> <li>✓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li> <li>✓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li> <li>✓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li> <li>✓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li> <li>✓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li> <li>✓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li> <li>✓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li> <li>✓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li> <li>✓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li> <li>✓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워(기름종이 등)</li> <li>✓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li> <li>✓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li> <li>✓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li> <li>✓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li> </ul>
부정 행위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실시</li> <li>✓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 행위 방지에 도움)</li> <li>✓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li> <li>✓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li> <li>✓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는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 필기도구는 진하지 않은 것 사용</li> <li>✓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li> <li>✓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 평가계에서 철저히 관리</li> <li>✓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li> <li>✓ 질문을 일체 금하고 필요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며 학생들의 소리 동작 등에 유의 등</li> </ul>
부정 행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li> <li>✓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li> <li>✓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li> <li>✓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li> </ul>

### [별지3]

#### 평가 관련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 1. 사안(민원)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 사안(시험지 유출 등)일 경우 사안 인지 후 즉시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 →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대책 결정

##### 2. 절차준수 목적

- 가. 사안(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
- 나. 학교 학업성적관리 방안체계 재정비 및 평가의 공정성·정확성·신뢰성 제고
- 다. 사안(민원)의 재발 방지를 통한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3. 사안(민원)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 가. 사안(민원)의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
- 나. 사안(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즉시 소집
  - 관련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공정성·정확성·투명성·신뢰성에 바탕한 해결방안 모색
  - 추가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방안 도출
- 다.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한 학교장 결재
- 라. 민원인에게 해결방안 안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유선,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
- 마. 관련자 조치
  - 사안에 따라 경위서 징구 및 주의·경고·징계 등 조치
  -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자를 재단에서 징계
- 바.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사안(민원)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 사안보고: 사안보고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별지4]

2020 학생평가 시행 보안 관리 점검표

고사명	학기 차고사	점검일자	2020. . . (요일)
작성자	(서명) 평가담당 부장교사	(서명)	확인자 (교감) (서명)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O, X)	비고
출제	1. 평가 시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2.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관련 교직원을 평가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는가?		
	3. 평가 시행 전 도덕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4. 평가관련 자료(월안, 문항정보표, 서술형 채점기준표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 보관하였는가?		
	5. 평가관련 자료(인쇄물, 참고자료 등)를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6. 평가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7. 평가 원안 결재본을 이중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8. 평가관리실의 책임자가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교감이 아닌 경우 [비고]란에 담당자 작성		
	9. 출제기간 동안 출제장소(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인쇄	10.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및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11. 평가지 인쇄기간 동안 인쇄실 출입시 휴대전화 등(촬영가능 기기)의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가?		
	12.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즉시 담당자에게 인계하였는가?(수령 당일 인쇄 원칙)		
	13. 평가업무 담당교사의 입회하에 관련자료들을 밀봉하고 확인하였는가?		
	14. 평가지를 평가관리실의 이중잠금 보관장(또는 이중철제문)에 보관하고 있는가?		
	15. 평가관리실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 및 보안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고란에 관련내용 작성)		
	16.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파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관련 자료를 평가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시행	17. 해당 과목 평가지를 고사 당일 평가관리실에서 반출하였는가?		
	18.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19.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였는가?		
	20. 고사본부에서는 감독 교사에게 답안지 인수 즉시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1. 시행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채점	22.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23. 채점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24. 채점기간 동안 채점장소(성적처리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였는가?		
	25.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는가?		
기타 의견			

## [별지5]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

1

출결 관리

#### [ 등교수업 ]

##### 기본원칙

- 교육부훈령 제343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 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 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학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치료통지서*</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li> </ul>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리통지서</li> </ul>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li> </ul>
<p><b>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b></p> <p>※ 임상증상 발현 시 ‘유· 초·중등 코로나19 감 염예방 관리안내 (<a href="#">제2-2 판</a>)’에 따라 선별진료 소 방문(해당 지침 5, 9, <a href="#">40페이지</a> 참고)</p>	<p style="text-align: center;"><b>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b></p> <p><b>* 참고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li> <li>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li> <li>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li> </ol>	<p><b>[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li> </ul> <p><b>[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li> <li>*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li> </ul> </li> <li>☞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li> </ul>

\*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라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 【 대상 학생별 정의 】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2판)’ 참고
-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2판)’에 따라 실시

##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2판)

###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1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2판)

## 2

## 학생평가

 지필평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 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수행평가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
-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밀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을 교과별 평가계획 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1회 기회를 더 주어 평가한다. 불가피하게 추가1회에 미참여인 경우 다음식에 의해 처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가능한 영역은 평가하고 불가능한 영역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대체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실시한다.

단, 수행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인 경우 아래의 공식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 기본 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점수 = 해당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text{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기본점수 제외)} \times \frac{\text{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의 배점 총점}}$$

\*출처: 학교교육과-6618(2020.5.11.), 12785(2020.9.7.), -13546(2020.9.17.)